

4.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6,572호 1999. 10. 11

개 정 이 유

앞으로는 산업구조가 전문서비스산업 위주로 변화하여 전문서비스산업분야의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 전문서비스산업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하고,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1999. 2. 8, 법률 제5890호)되어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기타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어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제도와 등록 및 갱신등록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현행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5, 제27조 내지 제27조의3 및 제39조 삭제).

나. 국가기술자격중 워드프로세서·속기·비서·직업상담사 등 사업서비스종목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의 상위등급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당해 종목의 하위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하위등급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시자의 부담을 경감함(령 제25조제2항).

다.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

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령 제29조의2).

라. 전문서비스산업분야의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인력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직업상
 담사·사회조사분석사·전산회계사 등의 자격종목을 신설함(령 별표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5항중 “제10호와 제20조제4항”을 “제
10호”로 한다.

제11조 본문중 “별표 4와 같다.”를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로 하고, 동조 단서를 삭
제한다.

제1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이용·미용 및 보석감정 종목의 명
칭은 이용장·이용사, 미용장·미용사 및
보석감정사로 한다.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시험문제의 공개) 제36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
력공단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술향상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문제를 미
리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중 “선다형 및 진위형의 시험”을
“선다형시험”으로 한다.

제25조중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의”를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응시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필기시험
의”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②서비스분야의 사업서비스종목중 상위등
급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당해 종목
의 하위등급의 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시행되는 당해 종목의 하위등
급의 검정(2년 이내에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검정)에
한하여 당해 종목의 하위등급의 필기시험
을 면제할 수 있다.

제27조 내지 제27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기술자격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신

청)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기술자격증 교부 또는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기술자격취득자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기술자격취득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적사항
2. 직무분야·종목 등 취득한 기술자격에 관한 사항
3.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에 관한 사항
4. 기술자격의 취소·정지·말소 기타 필요한 사항

제33조제1항중 “6월이상 3년이하”를 “3년 이하”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35조제1항중 “법 제15조제1호 내지 제3호”를 “법 제15조”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한국산업인력공단등이 제36조제4항 내지 제6항”을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제36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으로, “권한 및 보수교육의 실시권한”을 “권한”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를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6조제2항에 단서 및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술자격검정의 필기시험문제 및 실기시험문제의 작성·출제 및 관리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

1. 서비스분야중 기초사무직무분야의 기술자격
2. 서비스분야중 전문사무직무분야의 전자상거래 관리자

제36조제3항중 “법 제16조제1항”을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을 삭제한다.

④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은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전파통신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전파통신기능사·전파전자기사·전파전자산업기사 및 전파전자기능사에 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제외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의 관리

⑤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각호의 기술자격에 관한 제4항 각호의 권한은 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

⑥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검정관리운영 규정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제37조의 제목“(등록사항의 통보)”를“(기술자격취득자 관리현황의 통보)”로 하고, 동조 전단중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술자격취득자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 및 갱신등록사항을”을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내용을”로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 1. 기술·기능분야의 6. 통신직무분야의 기사란·산업기사란 및 기능사란중 “무선통신”을 각각 “무선설비”로 하고, 동표의 2. 서비스분야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제목 “기술자격의 등급별 응시자격”을 “기술·기능분야 및 서비스분야중 기타 서비스 기술자격 응시자격”으로 하고, 동표의 기사란 제4호중 “졸업예정자”를 “졸업예정자(4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후 중퇴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기사란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11.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별표 4의 산업기사란 제3호중 “졸업예정자”를 “졸업예정자(2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1

학년 수료후 중퇴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산업 기사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행정자치부장관관 앞에 재정경제부장관(통계청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회조사분석사	재정경제부장관 (통계청장)
---------	-------------------

별표 6 산업자원부장관의 검정대상기술자격종목란중 “컴퓨터그래픽스운용”을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전자상거래관리사”로 하고, 동표 정보통신부장관의 검정대상기술자격종목란중 “무선통신”을 “무선설비”로, “사무자동화”를 “사무자동화, 전자상거래관리사”로 하며, 동표 노동부장관의 검정대상기술자격종목란중 “산업위생관리”를 “산업위생관리, 전산회계사, 직업상담사”로 하고, 동표에 비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비교 : 전자상거래관리사 기술자격종목에 대한 검정은 산업자원부장관과 정보통신부장관의 공동소관으로 한다.

별표 7 기술사의 검정기준란중 “시험·운영·시공·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감리 등의”를 “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관리 등의”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사업서비스중 부기 및 주산 종목의 폐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기술자격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통신기사·무선통신산업기사 또는 무선통신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각각 무선설비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 또는 무선설비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보석감정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보석감정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서비스 분야

가. 사업서비스

직 무 분 야	종 목	등 급
기 초 사 무	워드프로세서	1급 내지 3급
	한글속기	1급 내지 3급
	영문속기	1급 내지 3급
	비서	1급 내지 3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내지 3급
	전산회계사	1급 내지 3급
전 문 사 무	직업상담사	1급·2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2급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2급

나. 기타서비스

직무분야 \ 등급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1. 음·식료품	조리 제과	조리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제과 제빵 조주
2. 위생	이용 미용		이용 미용 세탁

[별표 5]

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 기술자격의 응시자격(제11조관련)

구 분	종목·등급	응시자격
기 초 사 무	부기 1급 내지 3급 주산 1단 내지 11단 및 1급 내지 3급 워드프로세서 1급 내지 3급 한글속기 1급 내지 3급 영문속기 1급 내지 3급 비서 1급 내지 3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내지 3급 전산회계사 1급 내지 3급	제한없음
전 문 사 무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취득후 해당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 해당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대학졸업후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전문대학졸업후 해당 실무에 4년이 상 종사한 자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제한없음

주택회보